

환경범죄에 있어 인과관계에 관한 고찰

이 만 중*

《 차 례 》

- I. 서론
- II. 환경범죄의 개념과 특성
- III. 환경범죄의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
- IV. 환경범죄에 있어서 인과관계 추정
- VI. 결론

I.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오염 문제는 이제 선진국과 동일한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업공해 및 환경오염의 누적적인 발생과 시·공간적 확산, 심화는 산업화과정과 더불어 시작되어 그 이후 점점 가속화되었으며, 이는 70년대 이후의 중화학공업화 및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본격화 되었으며, 그 결과 이제 환경오염 문제는 국토의 전 부분에까지 확산되었으며 이에 대한 구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경문제의 처벌과 규제에 대한 형법의 역할은 단순히 환경보호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였던 측면이 있어 왔던 바, 이제는 환경범죄에 관하여 형법고유이론과의 조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형사적 제재에 있어서도 전통적 형법이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론적 난점의 해결을 위하여 환경범죄의 보호법익과 인과관계 등의 문제에 대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규율에 있어 형법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새로이 분석, 강구하여 형법이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헌병운영과장, 공군사관학교 강사, 법학박사

실제로 환경범죄는 전통적인 형사범과는 달리 대부분의 경우에 공중의 생명·건강뿐만 아니라 농림수산물의 중요한 생활수단을 서서히 장기간에 걸쳐 침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전통적인 범죄개념의 테두리를 넘는 새로운 법리개척이 요청되는 문제영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환경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있어 가장 큰 난제 중 하나가 인과관계의 증명인 바 이는 환경범죄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피해의 발생원인 및 정도의 불명확성으로 환경범죄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침해를 가하기 때문에 위험이 언제부터 어떻게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가 밝혀지더라도 책임을 추궁하는 단계에서는 인과관계의 유무, 즉 가해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과 규제에 곤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경침해행위가 발생시 형사법적 처벌과 규제를 위한 책임 귀속문제의 전제조건이 되는 인과관계 입증문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환경범죄의 개념과 특성

1. 환경범죄의 개념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환경범죄(environmental crime)라는 용어보다는 공해범죄, 공해사범이라는 말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공해’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을 전후하여 일본으로부터 도입한 이후라고 생각되며 공해가 법률상의 용어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63년에 제정된 공해방지법에서였다.

공해에 관한 정의의 하나의 예로서 공해방지법 제2조에 의하면 공해라 함은 첫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매연·먼지·악취 및 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둘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화학적·물리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수질오염, 셋째, 소음·진동의 경우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와 생활환경을 저해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라고 정의된다.¹⁾

이와 같이 공해란 일정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또는 소음·진동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현상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그 피해 발생원인으로서 주로 산업공해를 예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해의 실질적 범위가 매우 축소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였다. 일본의 공해대책기본

1) 공해방지법(1971. 1. 22. 법률 제2305호) 제2조 참조.

법은 우리나라의 공해방지법에 비하면 그 공해개념이 다소 확장되고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관계되는 피해’라는 피해방지적이고도 소극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으로 발생하는 법익침해에 착안하여 그 법익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만을 공해범죄로 파악하려는 태도이다.²⁾ 그러나 최근 들어 공해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환경문제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³⁾

이는 오늘날의 다양화·광역화되는 환경오염의 현상에 대하여서 공해개념만으로는 그 대처가 불충분하므로 환경보호의 적극화라는 법적인 관점에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공해문제에서 환경문제로 전환하여 환경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는 인간과 환경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점과 공해문제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오염문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코 인간 환경을 보전할 수 없다는 인식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1977년의 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오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 이르렀고,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서도 이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⁴⁾

이러한 환경범죄의 개념은 환경오염이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성과 실질적 불법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단순히 환경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던 종래의 인식에 반성을 하면서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형벌이라는 기본적 문제의식을 갖게 해주고 형법 고유의 기능을 인식하게 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2. 환경범죄의 내용

환경범죄라 함은 환경에 대한 위해행위를 의미하므로 환경개념의 내용의 확정에 따라 환경범죄의 범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환경개념에 관한 일률적인 정의는 없고 다만, 최광의·광의·협의 세 가지로 분류해 정의가 되고 있다.⁵⁾

먼저 최광의로는 환경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이에 상응하는 삶의 영위에 적극적, 소

2) 공해범 개념의 사용을 지지하는 견해로 이철, “공해범 처벌에 관한 소고”, 『검찰』 제1집, 1988.

3) 미국에서는 environment crime, 독일은 Umweltkriminalität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일본에서만 공해범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4)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4호에서는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착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서돈각, “공해와 환경”, 『법과 환경』, 삼영사, 1977, 11면.

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 즉 자연환경과 거주환경, 물리적 인공 환경, 그리고 불가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예컨대 종교·정치·경제·기술·행정제도 등이 여기에 속한다. 광의의 환경개념은 이 중에서 자연환경과 물리적 인공 환경을 포함하는 환경이며, 협의의 환경개념은 자연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연환경과 물리적 인공 환경이 환경개념에 포함된다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회적 환경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⁶⁾ 즉 정신적·사회적·문화적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된 가치들은 모두 환경의 개념 속에 포함하려고 할 경우 오히려 환경보호의 문제영역을 분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의 핵심까지도 실효성 없는 강령이나 요청 정도에 머물게 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⁷⁾ 따라서 환경개념은 자연적 생존 토대를 기초로 하는 제한적인 환경개념, 즉 생태학적 환경으로 파악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형법적·환경형법적 제재에 있어서는 협의의 환경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협의의 환경개념에 대하여 Triffterer는 세 가지 요소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토지나 물, 공기와 같은 환경매체이고, 둘째, 온도나 습도 같은 무생물적이거나 동식물 같은 생물적인 환경인자, 끝으로 총체로서의 생태계가 그것이다. 이 입장은 단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뿐 아니라 환경자체도 보호하여 인간생존의 기반을 확보하자는 의도로 생각된다. 이 견해에 따를 때 환경범죄는 협의의 환경 그 자체를 오염시키거나 침해하는 행위와 협의의 환경을 오염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케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환경범죄개념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인간에게 쾌적한 삶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의 실효성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범죄의 범위 속에 위의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환경범죄의 특수성

오늘날까지 환경침해행위에 대한 범죄성의 인식이 희박하였던 이유는 형사정책적인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환경침해행위가 갖는 다음과 같은 특성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첫째, 인위적 활동에 의해 야기된다는 점이다. 둘째, 침해간접성인데, 즉 환경오염 자체는 유해물질을 배출·폐기할 경우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만 공중의 성명,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은 유해물질의 배출·폐기를 통하여 대기·토양·수질 등이 오염된 후 간접적으로 나

6) 구연창, 「축조해설 환경보전법」, 삼영사, 1981, 27-28면.

7) Triffterer. a.a.O.. ZStW91(1979)

타나기 때문에 형사법적 제재시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결과에 대한 고의의 인정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침해의 완만성을 들 수 있는바 환경범죄는 대부분 유해물질이 서서히 배출 또는 축적되는 과정을 통해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공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케 되므로 개개의 배출·폐기 그 자체만으로는 공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더라도 그런 행위의 반복과 유해물질의 축적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피해의 발생원인 및 정도의 불명확성으로 환경범죄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침해를 가하기 때문에 위험이 언제부터 어떻게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밝혀지더라도 책임을 추궁하는 단계에서는 인과관계의 유무, 즉 가해자가 누구인가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피해의 상규성(정당행위성)을 들 수 있는데, 유해물질의 배출·폐기 행위는 대부분의 기업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이기에 죄의식이 아주 희박하다는 것이다. 과거 시민법 원리 하에서의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개인의 권리행사를 최대한 허용했기 때문에 환경범죄 자체가 문제되지 않았고, 개인의 권리행사를 최대한 허용했기 때문에 환경범죄 자체가 문제되지 않았으며, 개인의 피해는 단지 사법적인 구제로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환경침해의 심각성은 이제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형법적 처벌을 하게 하였다. 여섯째, 환경범죄의 주체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환경침해 및 그로인한 사람의 생명·건강에 대한 위험은 그 영향이 완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같은 유해물질을 배출·폐기하는 기업이 집단으로 모여 있을 때 어느 회사가 행위의 주체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며 행위자인 자연인과는 별도로 법인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도 문제되기 때문이다.

Ⅲ. 환경범죄의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

1. 보호법익에 관한 견해

환경범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이나의 문제는 환경범죄의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즉 전통적인 법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건강 등을 보호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익으로 토양, 수자원, 공기, 동·식물들 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다투어지고 있는데,⁸⁾ 이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견해가 있다.

1) 제1설

환경범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전통적인 형법이론에 근거한 견해로서 환경형법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환경의 오염에 따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다.

2) 제2설⁹⁾

환경을 이루고 있는 인자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환경인자는 실제로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의 존립기반으로서의 중요한 것이며, 특히 환경형법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법익에 한하지 않고 이러한 새로운 법익을 보호할 경우 형법적인 환경보호의 실효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형사정책적인 입장에서 지지되고 있다.¹⁰⁾

3) 제3설

사람의 생명과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 그 자체도 보호법익에 포함시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의 일종을 종합설 내지 절충설이라고도 하는데 그 논리적인 근거로서 환경 보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이 함께 보호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른바 이중적 법익보호에 논거를 두고 있는 견해이다.

4) 소결

환경보호란 어느 한 면에 치중하여 인간을 도외시키고 환경만을 보호하는 것일 수도 없고, 오로지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단정지어서도 안 될 것이다.

환경자체를 보호법익으로 보는 입장은 심각한 지구환경의 오염과 이로 인한 인간생존의 기반상실이라는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겠지만 이러한 견해는 환경법익이 너무 관념화되어 구성요인의 해석상 구체성을 잃게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인간과 동떨어진 법익은 의미가 없고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도 인간과 환경이라는 상호관련성 아래에서 그 가벌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환

8) Triffterer, a.a.O. S.311., S335f.

9) Herrmann, a.a.O., S299.

10) Herrmann, a.a.O., S297.

경범죄의 보호법익을 오직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에 두는 견해도 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견해는 환경오염이 개개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뿐만 아니라 결국은 공동체 전체에 대한 침해행위임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법익보호가 곧 개인의 법익-생명, 신체, 건강-보호와 직결됨을 생각할 때, 개별이익과 집단이익은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를 동시에 보호법익으로 보는 제3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법적 성격에 관한 의견

환경범죄의 법적 성격문제는 그 범죄의 유형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며 피해자가 어느 정도로 보호받아야 할 것인가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본다.

환경범죄의 법적 성격을 구체적 위험범으로 보고 오염물질의 배출·폐기행위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켰을 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고 환경의 오염, 파괴행위 자체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데,¹¹⁾ 독일에서는 추상적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 외에 추상적·구체적 위험범이라는 절충적인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¹²⁾

환경범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생각하게 되면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 발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¹³⁾ 배출 행위와 위협 발생간 인과관계입증 등의 해결이 곤란하게 된다.¹⁴⁾

반면에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는 견해는 단지 법익침해의 추상적 위험, 즉 일반적인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곧 구성요건의 충족을 인정하게 되는 견해로서 환경범죄의 법적 성격을 추상적 위험범으로 본다면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가 필요 없게 되고 인과관계의 입증곤란을 피할 수 있어서 환경오염이나 피해가 있게 되면 바로 처벌할 수 있어 환경보호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¹⁵⁾

그리고 독일에서의 추상적·구체적 위험범이라는 유형¹⁶⁾은 위협의 발생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위협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처벌대

11) 김종원, “공해의 형법적 규제”, 『환경문제의 현황과 대책』, 법무연구원 1987, 130면, 김기춘, 『형법개정시론』, 삼영사, 1984, 557-558면.

12) Triffiterer, a.a.O., S.336

13) 藤木英雄, “公害犯罪の問題點(-)”, 『警察研究』 제42권 7호, 1971, 4면 이하.

14) 김종원, 앞의 논문, 134면.

15) Triffiterer, a.a.O., S.336f ; Herrmann, a.a.O., S.294ff.

16) Horst Schroder, 『Abstrak-konkrete Gefährungsdelikte』.

상으로서의 구성요건해당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독일 형법 제325조가 전형적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동법 제325조 1항은 “... 타인, 동물, 식물 또는 기타 물건을 심하게 해할 수 있는 대기의 자연화합의 변화를 야기하거나 ... 타인의 건강을 행할 수 있는 소음을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려면 어느 정도 실질적 위험성이 존재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환경범죄의 법적성격은 보호법익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즉 환경 그 자체가 보호법익인 경우에는 그러한 환경자체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환경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고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구체적으로 위태화되었거나 침해되었을 때만 처벌하도록 구체적 위험범으로 보는 것이다.

한편 구체적 위험에 이르지 않은 추상적 위험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문상으로는 위험의 발생이 요구되지 않으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행하여졌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의 발생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독일의 추상적·구체적 위험범의 형태는 경미한 환경오염에 대하여는 그 자체로는 가벌성이 없고, 전통적인 법익, 즉 생명, 건강, 중대한 가치 있는 타인의 재물에 구체적으로 위험이 발생되었을 때에만 처벌이 고려되고, 중대한 오염의 경우에는 환경 그 자체의 손상만으로 구체적으로 위험발생이 필요 없이 가벌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환경범죄에 관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하리라 기대가 되며, 환경범죄의 법적성격을 추상적·구체적 위험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IV. 환경범죄에 있어 인과관계 추정

대부분의 환경오염은 복잡한 기업조직체에 의해서 발생하고, 또한 단일의 오염원에 의해서보다는 각종 요인이 서로 뒤얽혀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단독으로는 공중의 생명·신체나 환경을 침해할 수 없는 정도의 유해물질을 배출한 자에 대해서 각각 위험을 유발한 자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이론적·입법적인 해결이 요구되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이다. 더욱이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의 피해는 복잡한 반응을 나타내며, 또한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각종의 부차적인 조건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통적인 형사범과는 달리 환경범죄에 대한 책임귀속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1. 인과관계 해결의 문제점

환경범죄에 있어서 인과관계 문제의 해결을 곤란하게 하는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환경오염행위는 보통 다수인의 행위에 의해서 기인하며 다수인에 의한 환경오염행위가 누적적·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체적인 특정 환경매체에 의해 상호작용하여 누적효과, 합계효과, 종합관여효과가 생기게 된다.

또한 유해물질에 의한 인체반응의 복잡성과 인식할 수 없는 다양한 부차적 조건의 개입이 많으며, 행위자와 피행위자간의 인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행위로부터 결과발생까지의 기간이 매우 길고 그 과정이 복잡하다.

따라서 전통적 형사범의 경우 살인미수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에 대한 조건관계 인정이 명확하나 환경범죄에 있어서는 신물질에 의한 피해의 유발·조장·촉진에 관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나중에야 발견·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통적 형사범에서의 통상적인 논쟁 이전에 인과관계의 존부 그 자체, 즉 조건관계의 입증문제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특히 기업형 환경범죄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는 기술적으로 인과관계의 입증이 가능하더라도 가해자인 기업체에 비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이 월등히 열악하며, 피해자는 가해공장에 대한 출입권이 없으므로 조사가 곤란하다. 환경오염에 대한 공적인 조사기관이 없으므로 인해서 피해자측에서는 공적 입증자료의 획득이 곤란하지만, 기업체측에서는 거대한 기업체조직과 연구진이 있고 발생원인이 자사의 지배영역 내에 있으므로 인해 피해자의 입증보다는 가해자의 반증이 훨씬 용이하다. 또한 오염원인에 대한 탐지기술의 개발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기술보다 항상 뒤지게 됨으로 인하여 원인규명이 곤란하고, 게다가 오염원인에 대한 탐지기술도 대부분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환경오염 원인의 과학적 구명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며, 설혹 원인이 규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신학설에 대한 냉혹한 반론이 따르는 것이 보통이며, 또한 과학적 검증의 엄격성으로 인해 감정자 등이 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한 감정을 회피하는 경향을 지니게 된다. 여기서 기업체의 경우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감정자 등에 대한 로비, 압력 등에 의한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은 점 등 비과학적 요소의 개입가능성 또한 많다는 점이다.¹⁷⁾

17) 최병천, 「환경범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8, 6-7면.

2. 역학적(役學的) 인과관계론

환경범죄에 있어서도 일반 형사범죄와 같이 결과범의 경우에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범죄는 그 침해의 간접성과 완만성, 피해의 광범성, 행위의 상규성¹⁸⁾ 등 특성으로 보아 복잡한 오염원인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거나 누적되어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확정이 어렵기 때문에 “의심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일반형사법의 원칙까지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실상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한 이론이 이른바 역학적 인과관계이다.

1) 역학적 인과관계론의 개념과 원칙¹⁹⁾

역학(Epidemiology)이라 함은 병원균 또는 유해물질의 발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집단현상으로서의 병원의 증감과 자연적·사회적 제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방법으로 규명하고 개연적으로 명백해진 결과에 의하여 질병방지의 방법을 발견하려는 의학의 일부분야로서²⁰⁾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질병 등의 현상을 통계적인 관찰에 의하여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학상의 역학적 이론을 법적인 인과관계론에 응용하려는 이론이 역학적 인과관계론인데 원인물질의 유해성, 오염경로나 질병의 메커니즘 등 원인과정에 관하여 완전하고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실익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과관계 입증에 관한 역학 4원칙은 어떤 인자가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조건충족을 요구한다.²¹⁾

첫째, 특정한 인자가 발병의 일정기간 전에 작용하였을 것.

18) 藤木英雄, 앞의 책, 6면 이하.

19) 역학이란 의학의 한 분야로서 질병이나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발병 집단을 둘러싼 제조건의 변화를 탐색하여 그 조건과 질병의 상당관계를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규명하는 학문분야를 말하는 것으로 환경범죄에서는 역학적 증거를 배출행위와 공중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발생 사이의 상세한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량관찰에 의하여 통계적 방법으로 당해 배출행위와 위협발생 사이의 개연성(蓋然性)을 확인하는 작업을 가리키게 된다. 반면에 상당인과 관계설이란 상당한 개연의 의미를 “배출행위와 위협발생 사이에는 상당히 높은 정도의 발생가능성, 즉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20) 日本辯護士聯合會編, 「刑事裁判と力學的證明」, 日本評論社(東京), 1981, 16-17면.

21) 吉田克己, 疫學的 因果關係論と法的 因果關係論, 「ジュリスト」 440호, 1969. 12. 15, 107면.

둘째, 그 인자의 작용정도가 현저할수록 그 질병의 이환율(罹患率)이 높아질 것.

셋째, 그 인자의 소거에 따라 그 질병의 이환율 내지 정도가 떨어질 것.

넷째, 그 인자가 원인으로서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생물학적으로 모순 없이 설명될 수 있을 것과 같은 조건충족 여부에 의해서 역학적 인과관계 유무가 결정된다.

2) 역학적 인과관계론의 적용사례

역학적 인과관계론이 법적 인과관계의 입증수단으로 활용된 경우는 독일의 탈리도마이드 형사사건과 일본의 미나마따병 사건 및 이파이이파이병 사건 등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1) 독일의 탈리도마이드 형사사건 판례

탈리도마이드 사건이란 독일의 제약회사인 크루넨탈사가 개발한 탈리도마이드라는 입덧 제거제를 임신 중에 복용한 부인들의 대다수가 약품의 태아 흡수율의 상승과 최기형작용으로 인하여 사지가 이상인 기형아(phocomelia)를 출산한 사건이다. 그 피해는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독일 내에서는 1958년 5월 아아헨 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래 주 3회 씩 총 200회가 넘는 심리가 계속 되다가 1970년 12월 18일 법원은 소송을 종료하면서 상세하게 탈리도마이드의 최기작용을 법률적으로 단정하는 요지를 판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역학적 인과관계를 이용하여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2) 일본의 미나마따병 사건판례²²⁾

이른바 일본의 미나마따병의 사건개요는 1932년 이후 신일본 질소비료주식회사가 아세트알데히드의 제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염화메칠 수은화합물을 함유하는 공장폐수를 미나마따만에 배출해왔는데, 1951년경에는 미나마따만에 어류가 떠오르는 등 어업오염이 문제가 되었고, 1953년에는 최초의 환자가 나타났고 1956년에는 이른바 미나마따병으로서 크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熊本지검은 과실로 1958년 9월부터 1960년 6월까지 미나마따천 하구에 폐기물을 배출함으로써 7명에게 발병 또는 사망케하였다는 이유로 1976년 5월 4일 그 기간동안 그 공장의 사장과 공장장을 업무상과실상해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하였다. 그 후 1979년 3월 22일 熊本지법 형사 2부는 두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한 피고측이 항소,

22) 山口裕之, みなまた病 刑事裁判の争点とその概要, 『法律のひろは』 第41卷 6號, 1988, 4면 이하.

상고의 절차를 밟았으나 최종적으로 최고재판소는 1988년 2월 29일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건이다.

(3) 이따이이따이병 사건 판례²³⁾

일본의 이따이이따이병 사건은 광업소에서 배출된 카드뮴이 하천수질을 오염시키고 다시 이것이 농작물, 어류, 음용수를 오염시켜 하천 하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체내에 축적되어 그 결과 병에 이환된 사건으로서 1971년 6월 30일 부산지재의 1심에서 유죄판결을, 그리고 1972년 8월 9일 명고옥고재 김택지부에서의 2심에서도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에서도 역학적 인과관계론이 판결에 도입되었다.

3) 법적 인과관계와 자연과학적 인과법칙

인과관계 인정과 관련하여 어떤 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과학적 메커니즘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엄밀한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환경범죄의 인과관계 확정에 관하여 과연 역학적 증명론으로 충분한 것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역학적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법적 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인가에 관하여서는 집단현상과 어떤 특정인자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역학적으로 증거가 되고 피해자가 그 집단속에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법적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한다.²⁴⁾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자연과학적 인과법칙이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법적 인과관계는 긍정될 수 없으므로 전문가가 확정적으로 확정할 때에만 존재할 수 있으며, 법의 자유심증이 미칠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적 인과법칙이 부정될 경우 구체적 사건에서 인과관계를 긍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²⁵⁾ 이는 과학상의 절대적인 확증이 없으면 법률상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가해자측의 법적책임이 면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생각건대 환경범죄에서 그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완전히 해명되지 않으면 형법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할 때 오늘날 발생되고 있는 많은 기업개혁, 특히 기술개발에 따르는 기업재해 등은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것 때문에 책임이 회피 내지는 면제되고 처벌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런 불합리를 해결하여 효율적인 환경오염의 통제를 위하여서는 역학적 인과관계론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3) 富山地判 昭 46. 6. 30. 判決, 「判例時報」, 635호 17면.

24) 전창조, “공해법이론의 동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동아대, 1980, 18면.

25) Armin Kaufmann, a.a.O., S.576

3. 인과관계의 추정

환경범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확정을 강력히 요구하게 된다면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따라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역학적 인과관계론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검토한 바 있으나 다른 방법론으로서는 일정한 절차 하에서 인과관계의 존재를 추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전제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추정사실)을 추정하는 것이며, 추정에는 사실상의 추정과 법률상의 추정이 있다.

법률상의 추정의 대표적인 규정으로서 일본의 ‘사람의 건강에 관련되는 공해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공해범죄법) 제5조를 보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의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당해 배출만에 의해서도 공중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배출한 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배출에 의하여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내에 동종의 물질에 의한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은 그 자가 배출한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추정규정을 두고 있는데²⁶⁾ 일본의 한 교수는 이와 같은 추정규정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배출과 공중의 생명, 신체의 위험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추정규정을 설정하여 소정의 요건이 충족된 때에는 기업측이 주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발생이 자기회사가 배출한 유해물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 기업의 책임이 되는 것으로, 즉 거증책임이 전환되어 있는 것이고, 공해사건은 거의가 과학기술과 관련이 있고 또한 유해물질의 발생의 근원이 되는 기업활동에 대해 공장·사업자측이 배타적 독점적인 정보를 소유하고 있어 외부인은 이를 쉽게 파해칠 수 없는 경우에 형사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입증의 원칙을 적용하여서는 부당하게도 기업측에 유리하게 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평 관념에 반하므로 예외가 인정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²⁷⁾

그러나 이러한 공해범죄법 제5조의 추정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형사법에는 “의심스러우면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원칙이 적용되므로 인과관계는 추정이 아니라 확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공해는 대부분 복합적이며 동종의 오염원이 다른 곳에도 있는 경우가 많고, 이때 인과관계의 확정을 요구하면 결국 공해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지우지 못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추정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형법상의 대원칙을 희생해야 할 만한 효과가 이 경우에 있는가에 관해서는

26) 우리나라의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도 이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27) 藤木英雄, 『行政刑法』, 學陽書房(東京), 1976, 258면 이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공장밀집지대의 경우에 그 오염을 증대시키는 공장이 계속 진출해 온 경우에도 개별공장의 배출량이 전술한 요건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추정규정은 효과가 없다고²⁸⁾ 비판하고 있다.

생각건대 환경범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확정을 요구한다면 환경범죄의 특성인 피해의 간접성, 완만성, 불명확성 등으로 인하여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적 의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환경을 보호하고, 일반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추정규정을 두는 문제를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일본의 공해범죄법 제5조의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그 증명력이나 합리적인 추인에 관한 점 등에 관하여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VI. 결 론

오늘날 현대사회는 심각한 환경오염피해를 경험하였고 그 위험의 우려도 이제는 생존자체를 위협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은 물론, 효과적인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형사제재의 수단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환경침해행위의 범죄행위성과 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에 관한 고찰을 하게 되었다.

환경범죄의 특징을 살펴보면 침해의 간접성, 전파성, 완만성, 복합성·경합성, 침해행위의 상규성, 가해자나 피해자의 특성의 곤란성, 고의·과실의 구별의 불명확성, 가해자나 피해자와의 힘의 불균형성 등을 들 수 있고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 형법이론으로 설명이 어렵거나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전자의 문제로 대표적인 것이 인과관계, 고의·과실 등이고 후자의 문제로는 환경법익과 이에 따른 범죄유형의 확정, 법인의 형사책임, 예방에 초점을 맞춘 효율적 제재방안 등이 있다.

그러나 환경범죄의 보호법익은 단계에 따라 여러 가지로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생명·신체 이전 단계인 환경재의 보호라는 이익부터 이를 법익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환경범죄의 특성상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즉 환경은 침해되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그 자정력을 잃어 복구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 뿐 아니라 침해행위의 복합성, 경합성으로 말미암아 각 행위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를 차단하지 않으면 법익 보호를 이루지 못하는 특성을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있어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는 인과관계의 증명이다. 이

28) 西原春夫, 「犯罪各論」, 筑摩書房(東京), 1974, 95면.

는 환경범죄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인과관계이론으로 이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환경범죄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인과관계이론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기존의 인과관계 이론을 적용하면서도 그 내용상 환경범죄의 특수성과 증명에 관한 새로운 기법을 개발시킴으로서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여진다. 이의 대표적 이론이 역학적 인과관계이론이다. 이는 원인과 결과간의 관련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구명하는 것이 아니고 대량관찰과 통계적 방법을 동원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추출해 내는 방법으로서 그 발전의 정도에 따라 형사소송상의 증명방법으로도 원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환경범죄와 전통적인 형법이론과의 조화방안을 강구하고 환경보호 입법에 있어서 우리보다 앞서있는 독일, 일본 등의 입법례와 그 시행상태를 참고하고 환경형법에 독자성을 인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범죄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한편 환경범죄의 처벌을 위한 새로운 이론을 과감히 수용하고 환경보호의 효율성제고, 환경오염행위가 가지는 사회적 해악성 및 범죄성의 인식을 통한 일반예방, 환경관계법령의 통일적 집행을 위하여 환경범죄에 관한 처벌규정을 형법전내에 포함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하겠다.

또한 환경형법의 입법체계에 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환경법 분야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통일적 규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지만 이를 위하여는 환경법의 통일적 원리의 수립과 각 법률간의 조화 있는 정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경오염행위가 막대한 사회적 해악성을 가지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전국민이 갖고 국민 각자가 환경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는 한편 국가형사소추기관 및 법원은 전담부서 설치·전문인력 확보 등에 노력하고 환경범죄행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만 법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구연창, 「축조해설 환경보전법」, 삼영사(서울), 1981.
- 김덕우, “환경행정 부분의 규제완화”, 「나라경제」, 1996.
- 김일수, “우리나라의 서독에서 환경보호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과학」,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 김종원, “공해의 형법적 규제”, 「환경문제의 현황과 대책」, 법무연구원, 1987.
- 김철수, “환경권”, 「환경법연구」 제3권, 한국환경법학회, 1981.
- 박길용, “우리나라 환경 행정의 현황과 전망”, 「한국외대공공정책연구」, 1997.
- 서돈각, “공해와 환경”, 「법과 환경」, 삼영사(서울), 1977.
- 신동운,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책방안”, 「90년대의 범죄와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 이만중, 「환경범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서울), 1988.
- 이 철, “공해범 처벌에 관한 소고”, 「검찰」 제1집, 1988.
- 조명래,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 「환경과 행정」, 1997.
- 최병천, 「환경범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 O.Triffterr. Die Rolle des STrafrechts beim Umweltschutz in der Bunresrepublik Deutschland, ZStW91, 1979, Helf 1.
- J.Herramann. Die Rolle des Strfechts beim Umweltschutz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StW91 1979.
- A.Kaufmann. Tatbestandm ́ ssigkeit und Verursachung in Contergan Verfahren. JZ 1971.
- Frederik R. anderson. Daniel R. Mandelker and Dan Tarlock, Environmental Protection : Law and Policy.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1985.
- .J.Krier. Environment Law and Policy. 2nd. Ed. Bobbs Merill Col.
- 吉田克己, “疫學的 因果關係論と法的 因果關係論”, 「ジュリスト」 제440호, 1969.
- 藤木英雄, 「行政刑法」, 學陽書房(東京), 1976.
- 米田泰邦, “公害·環境侵害と刑罰”, 「現代刑罰法大系 第二卷」, 日本評論社(東京), 1983.
- 日本辯護士聯合會編, 「刑事裁判と役學的證明」, 日本評論社(東京), 1981.

山口裕之, “みなまた炳 刑事裁判の争点とその概要”, 『法律のひろは』, 第41卷 6号, 1988.

西原春夫, 『犯罪各論』, 筑摩書房(東京), 1974.

垣口克彦, “公害犯罪處罰法の問題點”, 『板南大學 板南論集 人文・社會科學編』 17(4), 1982.

【Abstract】

A Study of Causal Relationship in Environmental Crime

Lee, Man Jong

As the heavy chemical industry and economic development policy continued after 70's, industrial public nuisance and environment pollution have been generated accumulately.

According to these phenomena, problems about environment spread abroad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nd it makes us to need restriction about that kind of problem. But we couldn't make that environment protection harmonize with criminal law's own function about restriction.

So, from now on, we need consid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more desirable environment criminal law and a direction of legislation through deep legal research and consideration for punishment about environment crime.

First of all, we should analyze differences between traditional law and environment law after recognizing a general idea of environment crime. Also, we should contemplate foreign lawmaking about countermeasures finally. We should confirm individuality in field of environment law, make a unified theory and prepare harmonizing consolidation plan between each laws. But, above all,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recognize that an illegal act about environment pollution is an act of crime to harm our society immensely, each of people do his best in doing own role as a observer, a state-organ get all sort of requisites and then do its utmost in improving efficiency.